

중장기 전기소비절약 추진방안

-앞으로 절전정책이 나아갈 길-

글/황 규 호(동력자원부 전력국 전력운영과 행정사무관)

목 차

- I. 서 론
- II. 현행 절전정책에 대한 각계의 반응
 - 1. 머리말
 - 2. 각계의 반응
- III. 중장기 전기소비절약 추진방안
 - 1. 기본방향
 - 2. 추진방안
 - 가. 절전기기개발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 나. 절전기기제품 판매촉진
 - 다. 관급자재로 지정하여 보급확대
 - 라. 세계상 특혜를 통한 절전기기의 보급 확대
 - 마. 수요자 선호구매 심리활용
 - 바. 절전방식에 의한 주택·빌딩공사 권장
 - 사. 관계부처의 절전관련법령의 개정·보완
으로 총체적인 절전체계 확립
 - 3. 관련법·제도의 개정보완(안)
- IV. 향후계획

I. 서 론

지난 '90년 여름 세계의 화약고인 중동에서 걸프전 발발 후 그간 불필요하거나 낭비성 소비를 억제키 위하여 절전고시의 개정, 전기요금조정, 범정부차원의 전기소비절약추진대회, 절전캠페인 등 제반시책과 홍보수단을 총동원하여 절전을 유도해 왔으나 현재 와 같이 민주화·개방화된 “열린사회”에서 이러한 규제, 금지, 타율위주의 정책으로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로 인식되어 호응도가 낮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90년 5월 정부는 위와는 정반대의 측면에서 절전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즉,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절전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기의 절전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모든 절전가능분야에 상대적 이익부여를 통한 조정, 자율위주의 절전시책을 마련케 되었다.

위와 유사한 시각에서 최근 일본 학계는 전력요금 안정대책의 일환으로서의 “전력공급측면”, 절전정책 면에서 미국전력회사가 도입, 시행중에 있는 “수요측면”에서의 D.S.M(Demand Side Management)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에 있다.

II. 현행 절전정책에 대한 각계의 반응

1. 머리말

우선 중장기 절전정책방안을 논술하기에 앞서 '91. 5월 학계, 한전, 전기기기제작업체 및 전기업체의 전문가가 모인 자리에서 “현행 절전시책의 문제점과 향후 중장기적 개선방안”이라는 토의과제를 갖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 정리한 자료를 열거해 보는 것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개조식으로 약간 소개하기로 한다.

2 각계의 반응

각계인사의 기관, 직, 성명은 사정상 알파벳순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A>

○ '91. 5월 현재 전력유급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전력예비율이 불과 2~3% 수준).

- 이에 따라, 그간 절전시책을 펴는 과정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소비절약시책을 강구한다는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했음.
- 국민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국민에게 불편만 주는 시책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따르기가 어려워 소기의 절전성과 기대는 곤란(네온싸인 사용제한, 에스컬레이트 사용중지, 가로등 격동제 등)
- 이에 따라 우리 생활주변에 절전할 수 있는 IDEA, 방안들을 체계화, 제도화하여 자발적으로 실감있게 절전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 필요

○ 그동안 정부의 절전시책이 그때그때의 상황 대응 위주 정책이었음.

- 이에 따라 보다 근원적인 절전정책의 체계화, 종합정리 필요

- 그간 전기소비성향 및 구조, 절전정책 전개상황 종합
- 절전시책의 절전량 측정, 검증, 향후전망
- 장단기 전기소비절약정책의 수립

○ 에너지절약정책의 영리, 감수가능 미약
- 법령이 있더라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미미한 바, 에너지평가제도의 도입 실시로 에너지절약기업의 육성 필요

○ 건물 전·후로 구분하여 정책시행 필요
- 직접적으로 건물에 대한 전력수요관리를 위해서는 신축 때부터 절전기기의 개발, 보급유도 필요(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

- 건물 전
 - 건축형태, 방열기기설치 등에 대해 현행 법률은 기능별로 세분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건물설계당시에서도 고효율기기의 설치계획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설계 필요
 - 영리감수를 하는 시·군에는 전문지식이 없어 사전검사가 형식화 되고 있음.

- 건물 후
 - 현재 에너지 이용기기 시설의 운용기술수준이 미흡→사후관리제도 필요(에너지이용기기의 효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기기의 작동은 정상적인가 등의 점검)

○ 전기요금을 통한 간접적인 전력수요관리는 장기적으로 한계가 있음.

○ 보다 장기적으로 과감한 연구 개발투자가 필요
- 이경우 관련자료의 공개, 유통, 교환하는 제도 마련 등

- 전력투입량과 “전기사용량과의 비율”의 증대측면에서 절전기기개발 접근 필요

○ 기존 절약기기와 기술을 잘 활용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절전효과 기대가능

- 그러나 소비자들은 기기의 색상, 디자인 등에만 관심이 있고 기기효율에 대해서는 잘 모름.
- 따라서 절전기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유인책 강구 필요

- 유통과정에서 판매상에게도 이윤이 높도록 하는 방안강구
- 절전기기의 개발, 생산이 생산자(기업)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안강구

- 고효율에너지기기에 대한 정부, 한전 등 영향력 있는 기관의 홍보 지원으로 보급확대 필요

○ 단기적으로 전력수급이 심각할 경우 소비자에게 강제할 수 있는 제재수단도 필요(에어콘 가동시간 규제 등)

- 전력회사 입장에서 「적게 팔고 많은 이윤」이 있도록 절전투자방안 강구필요

- 에너지절약 촉진반편성 가동→효율진단→소비자에게 개선방안 지시→소비자가 개선조치→이러한 소비자에게 투자지원

<C>

○ 전자식 형광등은 기존 재래식 제품보다 20%의 절전효과가 있으나 수명이 짧고 가격측면에서 4~5배 고가

- 따라서 가격에 관계없이 지정된 장소에 대규모의 형광등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망(선설치 후 결과 검토)

- 전자식 형광등을 제작하는 업체가 중소기업인 만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 필요

- 정부측에서 확대보급할 수 있는 시행세칙 등의 법제화 마련
- 한전에서 선도적으로 적극 보급하겠다는 의지요망

<D>

○ '90년도에 전자식 안정기 비교전시회를 갖은 바 있고, 재래식 형광등과 전자식 형광등을 비교 검토중이나

- 전자식이 절전효과(백열등의 1/5정도 전기사용)는 있으나, 수명이 짧고 가격이 고가이며 전파방해 문제에 대한 실증시험 필요

- 특히 전자식 형광등에 있어서 “대량생산시 생

산원가가 얼마인지”에 대한 제반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한전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

<E>

○ '91년도 한전의 연구개발 지원자금이 200억원임.

- 전자식 형광등 개발에 관하여 한전에 연구신청을 해보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음.

<F>

○ 전자식 안정기 제작업체로서 KAIST와 공동연구 개발하여 보급중이고, 외국에도 수출중임.

- 국방부, 통신공사에도 기납품중

○ 미국은 3년마다 형광등을 교체하도록 하고 있음(총무처 내규:5년).

○ 업체가 난립되어 있어 수출가격보다 내수공급가가 낮음.

- 재래식 형광등 보다 3배정도 고가이고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재래식보다 2배 이상 고가일 수 밖에 없는 실정

<G>

○ 조명기구 교체비용이 건물관리비용의 25% 수준이나 국산화가 아직 안되어 있고, 수입품이 국산품보다 수지측면에서 양호

- 전구의 수명이 종전보다 1/2수준이어서 국가적으로 큰 손실인 만큼 국산품은 우선 수명 등에 있어 신뢰성부터 확보해야 할 것임.

- 한편 설치장소(공장, 사무실 등)에 따라 내구성이 각각 다름.

○ 금지, 규제보다는 자발적으로 절전하는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고,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 필요

- 미국의 경우 '95년까지 절전형 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 빙축열기기 외에도 “리베이트” 품목 확대요망

○ 가스냉방기는 의무사항이나 빙축열기기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 서울시의 경우 빙축열 냉방을 기

피하고 있음.

- 따라서 빙축열기에 있어서도 가스냉방기와 동일 차원에서 보급할 수 있는 여건조성 필요
- 특히 산업체 등이 빙축열 등에 의해 냉방을 할 경우 계약전력의 기본요금을 차등 징수하는 것도 필요

<H>

○ 에너지절약기로서 “Inverter”의 경우 부하관리나 배수펌프장에 유용하나, 서울시 하수도국의 경우 예산이 없어 사용 못하고 있음(“중량천”에만 Inverter 사용중).

- 제품생산이 초기단계인 만큼 홍보가 안되어 있어 전기기술자로부터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에너지관리공단, 한전이 주도하여 전국적인 「봄」 조성 필요
- '90년도에 청평양수발전소에 납품한 실적도 있어 대응량부하 관리외에 “중부하” 관리측면에서도 사용토록 조치요망

<I>

○ 한전이 시행중인 전기부하요금제도는 냉방부하에는 별 이득이 없어 개선요망

<J>

○ 산업용 전력기기의 고효율화를 위해 한전에서 절전기기구매시 종합낙찰제 범위의 확대요망

- 현재 조명기기는 「단체수의계약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조달청은 조합과만 계약·체결하고 있고 이 경우 최저가격낙찰제로 계약체결, 운용되는 실정으로 고효율기기의 개발보급은 사실상 불가능

○ “고효율”에 대한 개념 정의가 애매모호하고 평가기준도 다양하여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적용키 어려

운 점이 있음.

○ 에너지절약기기의 개발에는 우선 방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만큼 절전기기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 필요

- 고효율기기의 신뢰도 제고 및 보급확대를 위해 KS규격의 확대, 업체와 한전간 공동연구 추진 필요

<K>

○ 국내기업은 주로 외산제품을 수입, 사용하다보니 기초 전문지식이 별로 없고, 대형빌딩공사시 절전기 Inverter 설치 의무화방안 시행요망(세제, 금융지원, 계만절차 및 구비서류 간소화 등)

○ 금융업과 부동산업을 동시에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한전의 R&D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조건의 철폐요망

<L>

○ 형광등이나 조명기기 등 에너지절약가능 품목이 “중소기업 우선구매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품질이 불량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외산제품을 구입,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조명기기 등은 상공부와 협의하여 “단체수의계약품목”에서 제외 필요

○ “룸 에어컨”의 경우 절전효율을 기재하지 않고 있어 절전효율을 명시한 기기에 대하여는 특소세감면 등을 통하여 인센티브를 갖도록 제도개선 요망

○ “전자식 형광등안정기”는 KS규격이 없어 이에 대한 규격제정 필요

<M>

○ 한전의 전력정책은 단기적으로 에너지 Saving, 장기적으로 Conservation을 목표로 하고 있고, 특히 전력수요의 급증을 제어하고 전기의 합리적 사용유도를 위해서 고효율기기의 개발, 보급, 확대를 추진

중임.

- 이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빙축열기기의 보급
 -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제반지원방안을 강구중
- 한전의 "R&D"자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볼 때 에너지 Conservation 측면에서 업계의 기기성능을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이런 측면에서 한전의 예산 심의에서도 우대책 강구 필요
- 조명기기업체가 너무 많은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검토 필요

Ⅲ. 중장기 전기소비절약 추진방안

1. 기본방향

모든 전기소비절약 관계분야에 「상대적 이익부여」를 통한 자발적인 소비절약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기의 절전성과를 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 「절전제품의 개발 보급」 「설비 또는 공정의 최적화」 「절약기술의 개발·보급」을 중점 추진분야로 설정하였다.

2 추진방향

위에서 기술한 방향에 따라 현행 지원제도를 총체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기존 제도의 일부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그 추진방안을 개조식으로 열거하고자 한다.

가. 절전기기개발 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 절전제품을 「공업기반 기술개발과제」로 지정함과 동시에 동제작업체에 공업발전기금(용자 5~6%) 동을 통한 장기저리융자
- 「기기류, 부품 및 소재산업육성품목」으로 고시를 통한 중소기업구조 조정자금 지원
- 개발된 제품은 「대량생산품목」으로 지정하여 장기저리융자
- 한전에서 자금지원(빙축열기기 등)

나. 절전기기제품 판매촉진

- 「우선구매대상품목」으로 지정
- 수의계약, 제한경쟁계약 제도도입
- 다. 관급자재로 지정하여 보급확대
 - 「조달물자」로 지정을 통한 관공서에 보급확산
 - 이를 통한 절전제품의 민간기업에 보급유도
- 라. 세계상 특혜를 통한 절전기기의 보급확대
 - 절전제품은 특소세 인하
 - 외산으로 구입하는 절전기기는 관세율인하 통관절차의 간소화
- 마. 수요자의 선호구매 심리활용
 - 절전기기에 대한 역표시, 색상, 디자인개발 등
 - 절전기기·제품에 대한 특소세 차등적용(세탁기, 음향기기, 냉장고, TV 등)
- 바. 절전방식에 의한 주택·빌딩공사 권장
 - “에너지절약 설치공사비”는 과세표준령에서 공제
 - 에너지절약설비를 설치한 건물은 주택채권, 지하철공사, 상수도공사의 구입면제 또는 감면
 - “에너지절약설비 설치소요면적”에 대한 지방세,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 등 감면
- 사. 관계부처의 절전관련법령의 개정·보완으로 총체적인 절전체계확립
 - 주요 보완대상
 - 특별소비세법
 - 예산회계법
 - 관세법
 - 건축법
 - 지방세법 시행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 조세감면규제법
 - 주택건설촉진법
 - 특허법

3. 관련법·제도의 개정보완(안)

이러한 법령에서 개정·보완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관련법규의 개정보완(안)>

법 률 명	현 행 규 정	개 정 (안)	비 고
<p>1. 특별소비세법</p> <p>○ 에너지소비절약기 기의 특소세면제</p> <p>○ 200V전용 전기기기 에 대하여 특소세 차등적용</p>	<p>제1조 제2항 제16호 (특소세 부과대상 물품 및 세율)</p> <p>○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가정용에 국한) - 물품가격의 100분의 15</p> <p>제1조(과세대상과 세율)</p> <p>○ 전기사용물품에 대한 정격전압별 세 율 구분이 없음.</p> <p>○ 제2종</p> <p>1. 공기조절기와 동관련제품: 물품가 격의 100분의 25</p> <p>2. 냉장고와 냉동고 가. 대형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물품가격의 100분의 15</p> <p>나. 소형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15</p> <p>3. 전기세탁기 물품가격의 100분의 15</p> <p>4.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와 동 관련제품</p>	<p>○ 단서조항 신설 단, 에너지소비절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 ※ 「영」에 정한 사항 - 빙·수출열 냉방장비 - 히트펌프 - 온풍기(세라믹벽돌)</p> <p>○ 제2종 개정</p> <p>1. 공기조절기와 동관련제품: 물품가 격의 100분의 25 가. 정격전압 220V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15 나. 기타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25</p> <p>2. 냉장고와 냉동고 가. 대형의 것 - 정격전압 220V의 것 •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 기타의 것 • 물품가격의 100분의 20</p> <p>나. 소형의 것 - 정격전압 220V의 것 • 물품가격의 100분의 5 - 기타의 것 • 물품가격의 100분의 15</p> <p>3. 전기세탁기 가. 정격전압 220V의 것 -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나. 기타의 것 - 물품가격의 100분의 20</p> <p>4.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와 동 관련 제품</p>	<p>※효과: 200V 전용기 기 보급촉진에 따른 전력손실감소</p>

법 률 명	현 행 규 정	개 정 (안)	비 고
	가. 대형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나. 소형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15 다. 동 관련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5. 전기음향기기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6. 전기·전열·가스이용기기 물품가격의 100분의 15	가. 대형의 것 - 정격전압 220V의 것 •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 기타의 것 •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나. 소형의 것 - 정격전압 220V의 것 • 물품가격의 100분의 5 - 기타의 것 • 물품가격의 100분의 15 다. 동 관련제품 -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5. 전기음향기기 가. 정격전압 220V의 것 -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나. 기타의 것 -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6. 전기·전열·가스이용기기 가. 정격전압 220V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5 나. 기타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15	
2. 예산회계법시행령 ○ 에너지절약형기기 개발 품목에 대한 수의계약제도의 도입 ○ 발전용 기자재중 소비절약형 외자구입시 수의계약제도의 도입	○ 제104조 제3항 - 규정없음. ○ 제112조(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 소비절약형 외자구매시 수의계약 제도 없음.	○ 추가(5호 신설) - 공업발전법 제12조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에너지절약형 기기로 개발·승인한 품목으로서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에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 추가조항신설 - 발전용 기자재로서 전력소비절약형 외자를 채무부장관이 정하는 때	※ 상공부에서 개발품 목승인시 에너지절약형 기기표시필요 ※ 대상외자물품에 대한 용량·규격·성능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규에 따라 조정·검토후 별도 지정필요
3. 관세법 ○ 발전용 기자재중 전기소비절약물품에 대한 관세인하	제29조 제6항(특정물품 감면세) - 현행 지원제도 없음.	○ 추가조항신설 - 발전용 기자재중 전력소비절약을 위한 물품중 채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 관세인하율 및 대상은 추후에 별도 검토

법 률 명	현 행 규 정	개 정 (안)	비 고
<p>4. 건축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신축시 에너지 절약설비 설치면적의 미산정 ○ 호화주택의 동력시설 제한 ○ 건축허가절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규정없음. ○ 현행 제한규정 없음. ○ 현행 규정없음(외부단열, 목상단열에만 한정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산정시 전기절약설비에 소요되는 면적(빙축열기기등)은 미산정 ○ 3층 이하의 고급빌라·주택·공동주택의 에스컬레이터 설치금지 ○ 건축허가신청시 구비서류에 에너지 절약방법을 기재한 서류제출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산정시 재산세감면 및 용적을 개선
<p>5. 지방세법시행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절약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면적에 대한 지방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4조의 4 제3항 제5호 - 업무용토지 인정범위 산정시 건축면적에 용도·지역별에 따라 차등배율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 에너지절약설비에 소요되는 면적을 추가하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추가인정시 비업무용토지면적 축소 - 이 경우 취득세·종합토지세의 감면혜택 발생
<p>6. 법인세법 시행규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절약설비 설치 소요면적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내용 상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 - 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 감면
<p>7. 조세감면규제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절약설비 설치공사 비과세표준액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제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신설 - 에너지절약설비 설치공사비는 과세표준액에서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 - 취득세·등록세 감면
<p>8. 주택건설촉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절약설비 설치건물 신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신축시 주택채권매입 제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절약설비를 설치한 건물에 대하여는 주택채권매입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과 - 주택채권, 지하철·상수도공채매입 면제
<p>9.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8조(전기용품의 표시) - 전기기기 역률규제 및 표시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개정 - 전기기기의 기준역률이 90% 이상 되도록 규제 및 표시 의무화(공업진흥청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 - 전력손실감소 - 전기품질개선(저전압현상해소)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1조 제3항,
<p>10.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규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물 등 설치 허가기준 강화 및 사용방법제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3조 제1항 별표12의 옥상광고물(네온싸인, 광고탑 등 포함) - 사용시간: 제한없음. - 최대규격: 가로×세로×높이(20m×15m×15m) 2. 제13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치광고물 - 사용시간조정 또는 사용제한 ○ 신규설치광고물 - 허가제한 ○ 설치허가기준에 의한 간판 - 시설치간판: 사용시간조정 또는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자부고시(85-2)에서는 규제하고 있음. ○ 불법설치된 간판철

법 률 명	현 행 규 정	개 정 (안)	비 고
	별표14의 지주이용간판 - 자기·소유화단 또는 사유지, 공한 지 등에 화단 조성후 설치할수 있다. 3. 제13조 제1항 별표16의 이·미용소의 사인불 - 1개업소에 1개만 설치 4. 제13조 제1항 별표17의 주유소 폴싸인 - 1개업소에 1개만 설치	용제한 - 신규설치:허가제한 ○ 무단설치간판:강제철거 ○ 설치허가기준에 의한 사인불 - 기설치간판:사용시간 조정 또는 사용제한 - 신규설치:허가제한 ○ 무단설치간판:강제철거 ○ 설치허가기준에 의한 폴싸인 - 기설치간판:사용시간 조정 또는 사용제한 - 신규설치:허가제한 ○ 무단설치간판:강제철거	거시 많은 전기절약효과기대

Ⅲ. 향후 계획

그간 개발된 절전기에 대하여는 위에서 논술한 제반 지원방안에 따라 보급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고 이러한 차원에서 '91.8.1 상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계류 부품 및 소재산업 육성품목"으로 빙축열기 기제품을 발굴, 고시하여 장기저리용자조건인 중소기업구조 조정자금을 통하여 적극 개발·보급토록 조치한 바 있다.

한편, 아직 개발중이거나 개발되지 않은 품목, 기기에 대하여는 학계, 연구소 등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우선 절전대상 분야나 품목, 기기 등을 발굴, 조사토록 함과 동시에 동 세무지원방안을 수립, 추진중에 있다.

이에 대한 제반조사, 연구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동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절전정책을 수립·추진할 방침이다.

전력자원 따로없다 절약할때 자원된다

좋은전기 남용말고 올바르게 사용하자